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문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255

발의연월일: 2024. 9. 25.

발 의 자: 김문수 • 조인철 • 김준혁

박희승 · 정일영 · 김남근

양부남 · 김현정 · 황명선

문금주 • 정진욱 • 이건태

강경숙 • 백승아 • 진선미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육감이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 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시기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학교폭력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8항).

법률 제 호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8항 중 "실시하고"를 "실시하고, 각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실태조사 결과 공표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1조(교육감의 임무) ① ~ ⑦	제11조(교육감의 임무) ① ~ ⑦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	8		
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			
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			
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			
연 2회 이상 <u>실시하고</u> 그 결과	<u>실</u> 시하고, 각 학교		
를 공표하여야 한다.	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		
	<u>터 30일 이내에</u>		
⑨ ~ ⑭ (생 략)	⑨ ~ ⑭ (현행과 같음)		